

법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연구 영역 및 법심리학자의 역할*

김 민 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심리학과 법학의 융합 학문인 법심리학은 심리학의 한 분야로 법체계나 법률과 관련된 문제들에 심리학의 이론, 연구, 또는 실재를 적용하는 분야를 말한다. 최근 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범죄심리학이나 법정심리학이라는 분야와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 논문은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심리학과 법학의 융합 학문에 대한 명칭의 발달과 법심리학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의, 그리고 법정심리학과 범죄심리학 분야와의 비교를 통해 법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국 학자들이 법심리학의 연구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살펴보고 외국의 교육 및 훈련 내용 및 윤리 규정을 설명하여 한국에서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법심리학 관련 정책적 변화에 대한 설명을 통해 법심리학 분야에 대한 발전 가능성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법심리학, 범죄심리학, 법정심리학, 교육 및 훈련, 윤리 규정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4871).

[†] 교신저자 :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Tel : 02-2077-7684, E-mail : mkim76@sm.ac.kr

최근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쉽고 자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 성폭력 범죄의 경우 언론 보도량이 1997년에 비해 2007년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황지태, 2009). 또한 ‘도가니’나 ‘CSI’와 같이 범죄를 중심으로 다루거나 주인공이 범조인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성공, 그리고 김길태나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들의 얼굴과 성장배경, 가족관계, 직업, 취미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면서 사회적인 관심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들의 관심으로 인해 최근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공개 제도와 같이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형사사법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학문적으로도 범죄 행동이나 범죄자를 이해하려는 시도와 형사사법절차나 수사 과정 자체에도 관심이 증가하면서 법체계에 적용되는 심리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최근 “범죄심리학”, “법정심리학”, 그리고 “법심리학”과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였지만 이러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법체계에 심리학이 적용되는 분야가 정확히 무엇을 연구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현재 한국에서 “범죄심리학”, “법정심리학”, “법심리학”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고 각 영역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영역에서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잘못 오해를 하기도 하고 인접 분야와 혼동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심리학과 법학의 결합 학문의 발전 과정과 이 분야의

정확한 명칭의 유래와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법심리학”이라는 영역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다른 인접 분야와의 비교를 통해 법심리학 분야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에서 법심리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심리학과 법학의 결합: 역사적 사건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의학 전문가들이 재판에서 전문가로서 증언을 한 사례들은 1800년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장 유명한 사건은 맥나튼 사건이다(Roesch, Zapf, & Hart, 2010; 정재준, 2011). 1843년 다니엘 맥나튼(Daniel M'Naghten)이 편집 망상 장애를 앓고 있던 중 영국의 수상을 암살하려다 착오로 수상의 비서였던 에드워드 두몬드(Edward Drummond)를 살해하였다. 재판에서 맥나튼 측은 아홉 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전문가 증언을 통해 심신 상실로 인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를 주장하였고 배심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영국 및 미국에서 심신 상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는 “맥나튼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실험 심리학자인 빌헬름 분트(Wilhelm Wundt)의 학생이자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휴고 문스터버그(Hugo Münsterberg)가 “증언대에서(On the Witness Stand)”라는 에세이집을 통해 심리학적 지식이나 경험이 법체계가 재판에 어떻게 적용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하였다(Münsterberg, 1908). 문스터버그는 법정에서 전문가로서 증언을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심리학이 어떻게 법체계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목격자의 기억, 범죄의 탐지, 허위 자백, 암시, 인간의 감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그는 “다음의 일반적인 내용, 즉 심리학과 법이 만나는 지점에서 단 몇 가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만 설명하였다...나는 아직 변호사, 판사, 배심단의 심리학은 다루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매우 흥미롭게 실험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¹⁾라고 설명하며 연구 내용과 대상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였다(Münsterberg, 1908, p. 11). 그러나 당시 법대 교수이며 증거법의 대가인 존 위그모어(John Wigmore)를 비롯한 다양한 학자들이 문스터버그의 주장이 과장되고 실증적인 토대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발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문스터버그의 주장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Brigham, 1999; Ogloff, 2000; Packer & Borum, 2013). 그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 문스터버그는 심리학과 법학의 융합 분야의 선구자로 기억되고 있다.

미국 역사상 기념비적인 대법원 판결에서 심리학 연구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Roesch, Zapf, & Hart, 2010). 미국은 1950년대 초에도 ‘분리하되 평등하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공립학교에서 백인과 흑인을 분리하여 교육해야 한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1년 올리버 브라운을 포함한 13명의 학부모가 캔사스 주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인종 분리 정책을 취

하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의 연방 대법원 재판에 심리학자들이 인종 분리 정책이 흑인 아동들의 자존감 및 다른 성격적인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종합한 법정 의견서(amicus brief)가 제시되었다. 재판 결과 인종 분리 정책이 수정헌법 제 14조의 적법절차조항과 평등보호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판결문 각주에 심리학자들이 제시한 법정 의견서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실제로 법정 의견서가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현재도 심리학자들이 사회 및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나 연구를 통해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견들을 전문가 증언이나 법정 의견서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심리학과 법학의 결합: 명칭과 정의

위와 같은 다양한 사건과 증가하는 요구에 따라 ‘심리학’과 ‘법학’ 또는 ‘법학’과 ‘심리학’이라는 두 분야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학문을 어떠한 용어로 칭하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이 분야를 psychology and law(심리학과 법) 또는 law and psychology(법과 심리학)로도 칭하는데 이는 두 분야를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만 시켜 놓은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야는 두 분야의 결합을 넘어서 매우 독특한 새로운 분야로 발전하게 되었고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용어들이 제안되었다(Brigham, 1999; Ogloff, 2000; Heilbrun & Brooks, 2010). Tomkins와 Ogloff(1990)는 법과 심리학

1) “I have written the following popular sketches, which select only a few problems in which psychology and law come in contact....I have not touched so far the psychology of the attorney, of the judge, or of the jury--problems which lend themselves to very interesting experimental treatment.”

분야의 학자들을 심리학(psychology)와 법(legal)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psycholegalists,’ 즉 해석하면 ‘심리법학자’ 정도로 칭하자고 제안하였지만 나중에는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용어라는 이유로 이 용어를 제안한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한다(Ogloff, 2000에서 재인용)고 실토하였다. 그러나 Ogloff(2000)는 이 분야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forensic psychology’나 ‘criminal psychology’라는 용어는 너무 협소한 영역만을 포함한다고 지적하며 ‘legal psychology’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용어가 심리학과 법학의 융복합적인 영역을 적절하게 포함하고 심리학과 법학이 만나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 독립적이고 고유적인 영역임을 나타내며, 임상 심리학(clinical psychology)이나 인지 심리학(cognitive psychology)와 같은 다른 심리학의 하위 영역의 표현과도 비슷하고, 마지막으로 본 영역에 속해있는 전문가들에게 legal psychologists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제시한다고 설명하였다. 그의 의견에 동의하여 legal psychology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학자들도 있다(Packer & Borum, 2013; Roesch, Zapf, & Hart, 2010).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forensic psychology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Forensic”(포렌직)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forensis”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포럼(forum)이라는 의미로 로마시대에 재판이 열리던 광장을 의미하는데 법과학(forensic science)과 같이 법과 관련된 특정 연구 분야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Otto & Goldstein, 2013). 그러나 forensic psychology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는 없고 학자에 따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정의되고 있다. 우선 미국 심리학회 산하의 전문분야로 인정받

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의 개념인 “임상 심리학, 상담 심리학, 학교 심리학, 또는 미국 심리학회로부터 인정받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법체계에 전문적인 심리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심리학자의 활동”²⁾으로 정의한다(Packer & Borum, 2013). 즉, 미국 심리학회는 forensic psychology를 심리학의 특정 하위분야에서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미국 심리학과 법 학회(American Psychology and Law Society, APLS)는 “심리학의 과학적, 기술적 또는 특정한 지식을 법에 적용하여 법적, 계약적, 행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심리학의 하위 분야(예, 임상, 발달, 사회, 인지)에 종사하는 심리학자들의 전문가적인 활동”³⁾으로 정의하여 임상 및 비임상 분야를 포함하는 광의의 정의를 제시하였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미국 법심리학 위원회(American Board of Forensic Psychology, 2009, Burl, Shah, Filone, Foster, & DeMatteo, 2012에서 재인용)의 경우도 “법과 법체계와 관련된 질문과 문제들에 심리 과학을 적용하는 심리학자들의 임상적, 비임상적인 활동들을

2) “The professional practice by psychologist within the areas of clinical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y, and school psychology or another specialty recognized by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hen they are engaged as experts and represent themselves as such, in an activity primarily intended to provide professional psychological expertise to the judicial system”(http://cospp.org/specialties/forensic-psychology)

3) “professional practice by any psychologist working within any subdiscipline of psychology(e.g., clinical, developmental, social, cognitive) when applying the scientific, technical, or specialized knowledge of psychology to the law to assist in addressing legal, contractual, and administrative matters”

포괄하는 분야”⁴⁾로 정의한다. 또한 Otto 와 Goldstein(2013)은 법체계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심리학적인 연구, 이론, 실제, 그리고 전통적이고 전문화된 방법 등을 적용하는 분야로 정의하며 광의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호주 심리학회(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 APS)는 forensic psychology 영역을 “법과 사법제도와 접점을 이루는 심리학의 한 영역”⁵⁾으로 법정에서의 전문적인 심리학적 증거, 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컨설팅, 연구의 발전 및 제공, 그리고 법과 관련된 임상적 서비스를 법과 관련된 집단(forensic populations)에 제공하는 분야를 포함한다고 설명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이 분야를 설명하고 있다(Day & Tytler, 2012). 이처럼 심리학과 법학의 융합분야에 대한 명칭은 학자들 간의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거쳐 forensic psychology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정의는 협의적인 정의인 임상이나 상담과 같이 심리학의 몇 개의 하위 분야의 적용만을 포함하기 보다는 비임상 분야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정의를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심리학과 법학의 융합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수가 늘어나면서 전문가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Grisso, 1991; Roesch, Zapf, & Hart, 2010). 1968년에 열린 미국 심리학회 연차대회에서 심리학자였던 Eric Dreikurs와 Jay Ziskin이 “일종의 심리학과 법학

학회”라는 전문가들의 모임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1969년에 미국 심리학과 법학회(American Psychology-Law Society, APLS)가 발족되었으며 1984년에 이 학회는 미국 심리학회의 41번째 분과가 되었다. 그 이후 정신과 의사들이 법정심리학자들(forensic psychiatrists)을 위한 자격증명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법정에서 심리평가를 바탕으로 전문가 증언을 했던 심리학자들이 자격증명제도를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움직임이 더디게 진행된 것을 불안하게 느낀 Florence Kaslow를 선두로 미국 법심리학 위원회(American Board of Forensic Psychology, ABFP)를 만들었고 그 후 미국 법심리학 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Forensic Psychology, AAFP)를 만들어 회원 및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관리와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미국 심리학과 법학회 외에도 유럽 심리학과 법학회(Europ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 EAPL)와 호주, 뉴질랜드 정신의학, 심리학과 법학회(Australian & New Zealand Association for Psychiatry, Psychology & the Law, ANZAPPL)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미국 심리학과 법학회와의 공동 학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심리학과 법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forensic psychology 라는 학문 분야를 어떠한 용어로 칭해야하는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최초로 심리학과 법학의 융합 분야를 소개한 박광배는 ‘법심리학의 영역: 요약’(1998)이라는 논문을

4) “Forensic psychology encompasses the activities of psychologist, both clinical and non-clinical, who apply the science of psychology to questions and issues related to the law and legal system.”

5) “the branch of psychology that interfaces with the legal and justice systems”(http://www.psychology.org.au) (Day & Tytler, 2012에서 재인용)

시작으로 ‘미국 법심리학의 발전과 현황’(1999), 그의 저서 ‘법심리학’(2002)을 통해 법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소개하였다. 하지만 논문의 영문 제목과 저서의 영문 제목이 forensic psychology가 아닌 psychology and (the) law로 번역하였다. 2000년 초반까지 발간된 논문과 저서에서 법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심리학과 법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분야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법심리학 분야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제시되지 않았다(박광배, 최상진, 이훈구, 1998; 박광배, 1999; 박광배, 2002).

김시업(2005)은 범죄심리학이라는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 인접 분야를 설명하면서 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과 법심리학(legal psycholog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발간된 범죄심리학, 법심리학, 법정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국내외의 전문 서적 및 논문들의 내용들을 분석하여 각각의 영역을 구분하고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우선 세 분야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해 출간된 전문 도서의 각 장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정심리학은 재판과 관련된 현장의 실무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범죄행동이나 범죄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범죄심리학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법심리학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범죄심리학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목격자 증언, 형사책임과 재판, 양형의 일관성, 교도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 범죄심리학과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정심리학과 법심리학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본문에 때로는 ‘재판심리학’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면서 법정심리학이 재판과 관련된 현장의 실무를 다루는 학문이고 법심리학은 목격자

증언과 같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 설명에 따르면 두 영역의 차이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008년에 한국심리학회 산하의 12번째 분과로 법정심리학회가 창립되었다. 한국법정심리학회 설립 목적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법과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심리학의 기여를 촉진하고, 심리학자들이 법의 제 문제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법조계가 심리학적 문제들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쌍방 교육을 증진시키며, 법조계와 심리학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법과 심리학 분야의 연구, 교육, 그리고 봉사활동을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 심리학회 홈페이지에 제공되어 있는 법정심리학회에 대한 설명은 미국의 관련 기관이나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psychology and law 또는 forensic psychology에 대한 광의적인 정의와 거의 동일하다. 또한 *Introduction to Forensic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이라는 저서가 “법정 및 범죄 심리학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Bartol & Bartol, 2013). 미국에서도 심리학과 법학의 융합분야를 초기에 어떻게 불러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 분야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번역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관련 분야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분야를 지칭하는 용어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그리고 다른 분야의 심리학자들 및 법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forensic

6) <http://www.koreanpsychology.or.kr/aboutkpa/affiliatedhome.asp>

psychology라는 영역은 법심리학 또는 법정심리학이라는 용어로 혼용되어 번역되고 있는데 더 이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어의 통일이 절실하다. 앞서도 설명하였지만 forensic psychology 분야에 대한 협의와 광의의 정의가 존재하는데 협의의 개념 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고 그 개념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전문 용어는 법정심리학이 아닌 법심리학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용어 사용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법정심리학이 아닌 법심리학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인접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죄심리학’이라는 분야는 ‘법심리학’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김시업(2005)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범죄심리학, 법심리학, 법정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전문 서적 및 논문들의 내용들을 분석하여 범죄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그는 범죄심리학과 법정심리학은 서로 중첩되어 있고 범죄심리학 분야가 법정심리학이라는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범죄심리학은 “범죄자의 범죄원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를 형사사법 분야에 적용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죄질의 경중을 판단하고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영역”(이수정, 2010, pp. 24-25), 또는 “범죄나 범죄자를 설명하는데 있어 심리학적 이론과 지식을 적용하여 범죄와 관련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학문”(박지선, 2012, p. 19)으로 정의한다. 법심리학이 다양한 심리학적 지식을 법이나 형사사법에 적용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학문으로 본다면 범죄심리학의 정의와 비교하였을 때 많은 영

역이 중첩된다. 예를 들면,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법심리학의 정의는 현재 범임상심리학(clinical forensic psychology)이라는 분야에 해당되며 이들은 범죄자나 수형자들의 위험성 평가나 치료감호소와 같은 기관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법심리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로 허위자백과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거짓말 탐지, 수사관의 신문 기법과 같이 수사와 관련된 분야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심리학이라는 분야는 법심리학의 광의적 정의에 포함되므로 법심리학의 하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심리학 분야의 연구 영역과 세부적인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심리학의 하위 영역의 구분

대체적으로 법심리학은 크게 임상과 비임상의 두 하위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aney(1980)는 심리학과 법학의 관계를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법 안에서의 심리학(psychology in the law)’이다. 이는 법체계 내에서 심리학자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들과 함께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심리학자들이 법원의 요청으로 피고인에 대한 평가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피고인의 심신 상실 여부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심리학자가 전문가로서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증언할 수 있다. 또한 배심원을 선정하거나 특정한 변호 전략

에 대한 배심원들의 태도, 그리고 특정한 재판 전에 이루어지는 언론 보도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변호인은 그 내용을 토대로 특정한 개인적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판단되는 배심원 후보자는 선정하지 않거나 변호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Hancy는 심리학자들의 이러한 역할이 법체계 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보았다. 둘째는 ‘심리학과 법(psychology and law)이다. 이는 심리학적 원칙을 사용하여 법체계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부분을 말한다. 심리학과 법학이 동등하게 사용되는 부분으로 법이 인간 행동에 대해 어떠한 추정을 하는가와 관련된다. 예를 들면 목격자의 증언의 정확성, 허위 자백, 배심원들의 의사 결정에 대한 부분으로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형사법체계의 운용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경찰 라인업에 대한 심리학자나 법심리학자들의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목격자 지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권고되었고 많은 경찰서에서 목격자 지목 방법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Wells, Small, Penrod, Malpass, Fulero, & Brimacombe, 1998). 또한 판사나 배심원의 개인적 특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청소년의 경우 피의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가를 연구할 수 있다. 셋째는 ‘법의 심리학(psychology of law)’이다. 심리학자들이 ‘왜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가?’, ‘왜 사람들은 법이 필요한가?’와 같은 질문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법이 어떠한 심리학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행위의 결정 요인으로서 법은 어떻게 작용하는가와 같은 물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

구는 심리학자로서 연구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연구결과를 적용하기도 어렵고 심리학 연구처럼 변수를 조작하거나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Heilbrun(1998)은 심리학과 법학의 융합 분야를 다음의 세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임상, 상담, 학교 심리학을 포함하는 임상(clinical) 영역, 사회, 발달, 인지, 실험 심리학을 포함하는 실험(experimental) 영역, 법학적인 지식이나 훈련에 중점을 두고 행동 과학적인 훈련을 받는 법률(legal) 영역이다(Brigham, 1999에서 재인용). 우선 임상 영역의 경우는 임상적인 평가도구, 치료적 개입의 효과, 성범죄나 폭력범죄와 같이 특정 범죄 행동에 대한 역학, 위험성 평가 등의 연구와 훈련을 바탕으로 범죄자, 피고인, 수형자들에 대한 평가, 법체계 내에서의 치료 등과 같이 실무에 직접 적용되는 부분이다. 실험 영역의 경우에는 기억, 지각, 아동발달, 집단 의사 결정 분야의 연구와 훈련을 바탕으로 배심원 선정이나 재판 전략을 세우기 위한 컨설팅을 해주거나 법정에서 전문가 증언 제공과 같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률 영역의 경우 정신건강 법, 치료사법과 같은 건강과 과학과 관련된 법적인 움직임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입법 및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법령을 만드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Hess와 Weiner(1999)도 법심리학이 세 개의 명확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는데 법적인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학적 과정의 적용, 배심원의 의사 결정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의와 같은 법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이라는 영역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⁷⁾

7) “the application of basic psychological processes to

Packer와 Borum(2012)은 기본적인 심리학 분야가 법심리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사회심리학 분야의 경우 배심원 선정, 증인의 신뢰성, 배심원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변호사나 법원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회심리학적 패러다임, 이론,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법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무엇이 성희롱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나 피고인이나 배심원의 성별이 특정한 법 관련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연구도 진행할 수 있다. 발달심리학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자문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아동 법정 증언의 정확성 및 피압시성,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소년의 형량과 관련된 발달적인 문제, 이혼의 영향 등이 세부 연구 분야이다. 인지심리학의 경우에는 법과 연관된 지각과 기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특히 목격자 지목, 목격자 기억의 정확성, 거짓말 탐지 능력 등이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다른 심리학의 하위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이론 및 연구 내용, 개념과 지식을 관련된 법이나 법체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목격자의 지목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허위 자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임상 심리학 분야의 경우에는 형사 및 민사적인 맥락 모두에 사용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을 받을 수

legal questions, research on legal issues, such as the definition of privacy or how juries make decisions, and knowledge of legal issues”(p. ix).

있는 능력, 책임 능력, 치료 효과, 위험성 평가와 같은 인지 및 심리학적 평가를 통해 특정 법적 쟁점에 사용될 수 있다.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적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노동자의 보상, 유언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대한 판단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가정법과 관련하여 아이의 양육권 판단이나 친권 박탈, 방문권 판단에 대한 자문활동도 중요한 영역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법심리학을 세 개의 하위 연구 및 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각각의 연구자들의 세부 영역에 대한 분류 방법이나 기준은 다르지만 심리학 연구 분야들이 어떻게 법이나 법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심리학의 하위 연구 분야가 법률이나 형사사법체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하였다.

법심리학자의 교육 및 훈련 내용

법심리학자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이해하면 법 심리학자의 능력이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1995년 빌라노바 로스쿨에서 미국의 법심리학의 교육과 훈련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다 (Bringham, 1999; Ogloff, 2000). 소위 ‘빌라노바 컨퍼런스’에 법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부, 대학원(박사 및 복수학위 과정을 포함), 실습, 인턴십 세팅, 박사 후 과정, 평생 교육과 같이 교육과 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곳에서 법심리학자가 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의 내용을 다섯 개의 영역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실질적인 심리학으로 발달, 사회, 인지, 임상과 같은 기본적인 심리학적 지식과 함께

중요한 윤리적, 전문적인 내용을 습득해야 한다. 둘째, 연구 방법과 통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는 실험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필요한 지식이다. 셋째, 기본적인 법적 지식이 필요하다. 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및 법의 원리, 그리고 법심리학자의 활동 분야와 관련된 특정 법률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넷째, 실질적인 법심리학적 지식으로 이는 사회과학적 증거가 법체계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형사책임능력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피고인(피의자)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피고인이 현재 심신장애를 앓고 있는지 여부는 정신과 의사 또는 임상심리학자의 평가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형법에서의 심신장애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물을 변별한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법적인 판단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법심리학자(자세히 말하면, 범임상심리학자)는 평가를 통해 피고인의 현재 심신장애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를 앓고 있었는지 여부,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후자는 실질적인 법심리학적 지식에 해당된다. 결국 기존의 임상 평가 도구들뿐만 아니라 특정 범임상 평가 도구들에 대한 지식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평가의 결과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적 지식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학문 및 훈련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논문)한 경험이 필요하며 임상적인 평가 분야의 경우에는 실습이나 인턴십 등을 통한 임상

적 경험도 필요하다.

미국 심리학과 법 학회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2010-2011년 법심리학 대학원 과정에 대한 가이드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약 24개의 대학원에서 범임상(clinical forensic) 전공 과정을, 15개의 대학원에서 비범임상(사회 또는 실험 심리학) 전공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7개의 대학원에서는 심리학 박사(PhD)와 법학 박사(JD)의 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복수 학위 과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복수 학위가 있다고 해서 전문가로 활동할 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Parsi, 2010).

Sullivan, Colby, Wagner, Bond, 그리고 Shulman(2007, Day & Tytler, 2012에서 재인용)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은 다음 세 가지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지적 및 인지적인 수련으로 지식과 전문가적인 사고방식을 갖추는 것으로 전문가로서의 핵심적인 지식, 능력, 연구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실무가로서의 전문가적인 실습을 말하는데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뜻하며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셋째, 전문적인 집단의 가치를 배우는 것으로 진실성과 도덕성이 바탕이 된다. 결국 지적 능력, 수행 능력,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행동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수련과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였다.

Day와 Tytler(2012)도 범의자, 용의자, 피고인과 같이 법과 관련된 집단에 제공되는 임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심리학자의 경우 몇 가지 핵심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

8) 자세한 내용은 <http://ap-ls.org/education/GraduatePrograms.php>

세히 살펴보면 법적, 준(quasi)법적인 소송절차에 심리적 본질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이를 보고하기, 심리적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심리학적 진단내리기, 심리적 개입(심리적 교육, 개인, 집단, 가족 심리치료, 사회 복귀), 프로그램 평가, 컨설팅, 수퍼비전,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연구에 대한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상 재판 상황을 제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평가, 보고서 작성, 그리고 법정에서 전문가 증인으로서 의견을 증거로 제시하는 방법을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학생들은 전문가로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떠한 질문들을 받게 되는지, 증거나 자료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반대 신문이 어떻게 이루어지 모를 수 있다. 은퇴한 판사나 변호사들이 가상 재판에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주거나 보고서 자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법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교육 과정은 학생들에게 분석적인 사고력, 법적인 기준에 대한 이해 및 윤리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특히 범임상심리학자들의 훈련이 일반 임상심리학자들의 훈련과 어떻게 구분되고 범임상심리학자로서의 전문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만드는 훈련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 방법은 범임상심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비범임상심리학자들, 즉 법정에서 경찰 신문 기법의 문제점이나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실증적인 연구 경험 및 지식을 토대로 재판의 쟁점 사안에 대해 전문가로서 법정 증언을 연습 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법심리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로 배울 수 있는 학위 과정이 존재한다. 우선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가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지만 범죄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실제로 법심리학의 하위 연구 영역인 범임상심리학 분야와 많은 부분 겹친다. 또한 학과 소개에 범죄와 관련하여 사회학, 법학, 경찰학 등 사회과학 분야와 의학, 생물학, 유전학과 같은 자연과학 분야 등 다양한 인접학문 학제적 연구를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법심리학 영역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⁹⁾. 최근에는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심리학 협동과정¹⁰⁾이 생겼으며 법심리학 트랙과 수사학 트랙으로 구분하여 자신의 특화 영역을 선택할 수 있고 졸업과 함께 법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법심리학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제공되는 곳도 자세한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도 제한되어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법심리학 관련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므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법심리학 관련 정책적 변화

빠른 속도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판사나 배심원들의 자유 심증에 의해 증거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경우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의 법정 증언은 판사나 배심원들에게 특정 증거를 이해시키거나 사실 판단에 도움을 주는 역할

9) <http://www.kyonggi.ac.kr/webService.kgu?menuCode=K0301M010034>

10) <http://hallym-psylaw.tistory.com/1>

을 한다.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어 전문가 증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수정, 2012). 형사소송법 제 279조 2항에 의하면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미국에서의 전문가 증인의 개념이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김민지, 2010; 법원행정처, 2007).

이수정과 서상진(2010)에 의하면 한국에서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는 3명에게 의뢰된 43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 관련 범죄, 살인관련 범죄, 폭력관련 범죄, 강도 관련 범죄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성폭력 습벽 유무, 성폭력 성향, 성범죄 치료 대책, 범행전후심리상태, 재범위험성, 정신질환 여부, 주취정도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위험성과 같은 특정 분야의 경우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판결문에 인용되는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재판에서 제시될 증거가 과학적인지 아니면 쓰레기 과학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사가 그 증거를 법정에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떠한 증거가 과학적 증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의 Daubert 판결을 통해 신뢰롭고 과학적 증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판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1) 이론이나 기술이 검증되었는지 또는 검증

할 수 있는지, 2) 이론이나 기술이 학계의 동료들에 의해 심사되고 출판 되었는지, 3) 기술에 대해 알려져 있는 또는 잠재적인 오차율을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4) 이론이나 기술이 해당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한다(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1993; 김민지, 2010). 이는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얻은 결과물이어야만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졌고 평가를 했던 법심리학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과학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때 재범 위험성 평가를 위해 사용한 평가 도구들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는지, 도구들에 대한 논문이 동료들의 심사를 거쳐 출판 되었는지, 그 도구들을 사용하여 재범 위험성 평가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오류율 또는 잠재적인 오류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범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나 학계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위해 이 도구들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판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시되고는 있지만(Gotowski, Dobbin, Richardson, Ginsburg, Merlino, & Dahir, 2001; Kovera & McAuliff, 2000) Daubert 기준이 적용되고 난 후 전문가 증언을 제한하거나 배제시키는 비율이 25%에서 4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는 기준이 이전 보다는 더 엄격해 졌다고 볼 수 있다(Krafka, Dunn, Johnson, Cecil, & Miletich, 2002).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판사의 자유 심증에 기초하여 증거의 허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고 증거가 얼마나 과학적인지에 대한 평

가 기준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다(이수정, 2012). 한국에서는 증거에 대한 허용성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일단 모든 증거를 재판에 허용하고 증거가 얼마나 타당한가에 따라 증거의 중요도가 결정된다고 한다(박광배, 1997). 결국 법정에서 전문가로 증언을 하는 법심리학자들은 본인의 증언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본인이 사용한 이론, 연구 방법, 평가 도구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정 증언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Daubert 기준에 근거하여 본인의 보고서 내용이나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이 얼마나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인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법심리학자의 윤리 규정

미국 심리학회와 법심리학자들의 윤리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특히 몇 가지 규정은 한국 법심리학자들에게도 유용하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우선 심리학적 평가가 교도소와 같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평가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다고 해서 이 평가를 법심리학적 평가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피고인이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 임상 및 상담 심리학자로부터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 치료를 반드시 법심리학자의 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심리치료를 담당했던 심리학자가 치료를 했던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전문가로서 증언을 했지만 그 내용이 법심리학적 의견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법심리학자로 볼 수 없다. 법심리학자의 활동은 심리학적 지식을 법에 적용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심리학의 하위 분야(예, 임상, 발달, 사회, 인지)에 종사하는 심리학자들의 활동이다. 결국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평가나 치료 제공, 법정에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법정 의견서나 전문가 증언 제공, 재판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법원, 변호사 또는 다른 관련자들에게 전문가로서 자문 제공, 재판과 관련된 연구 수행, 그리고 법심리학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법심리학자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몇 가지 중요한 윤리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법심리학자들은 법체계 및 개인의 법적 권리에 대한 지식, 의견 및 증언에 대한 지식은 과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즉, 법정에서 전문가로서 증언을 하는 경우 그 증언의 내용은 과학에 기초하고 신뢰롭고 타당한 원칙과 방법을 사용하여 그 재판 또는 해당 사건에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법심리학자는 교육, 훈련, 수퍼비전 경험, 컨설팅, 연구, 전문가적 경험 등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법심리학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만약 법심리학자가 자신에게는 새로운 대상, 영역, 기술 또는 기법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나 강의를 제공하거나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는 관련된 교육, 훈련, 수퍼비전, 컨설팅 또는 연구 경험이 있어야 한다. 즉, 기존의 상담 및 임상 심리학자의 경우 법심리학의 영역에서 범죄자와 같은 새로운 대상에 대해 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려면 범죄자, 관련된 법적 지식, 형사사법 체계, 평가를 위한 법심

상도구에 대한 교육, 훈련, 수퍼비전 경험, 또는 연구 등을 통해 법심리학자로서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범임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때는 법적으로 관련 있는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동일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얻어진 정보라도 치료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평가 결과와 법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평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 도구가 법적인 장면에서 사용되었을 경우의 강점과 한계점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심리학자에 대한 윤리 규정이 외에 미국의 연방증거법 704조에 의하면 형사 재판에서 전문가가 증언 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궁극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 즉 피고인이 범죄방위 요건 또는 범죄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지만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심신 상실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인 범임상심리학자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평가 후에는 법정에서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이 원할 경우 법정에서 전문가로서 증언을 하게 된다. 이때 전문가는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전반적인 정신 건강이나 범행 당시 어떠한 정신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설명할 수 있지만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가 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 즉 궁극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할 수 없다.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 판단은 전문가의 역할이 아닌 판사나 배심원들과 같은 사실판단자의 역

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루어지는 법적인 판단 사안이기 때문에 실험이나 평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판사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직접 물어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임상심리학자는 평가도구를 바탕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법심리학자로서의 윤리 교육은 정규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상, 상담, 발달, 인지 등의 심리학의 하위 영역에서 법심리학 분야로 활동이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과 관련된 지식과 법심리학적 지식 외에도 법심리학자로서의 윤리 규정에 대한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심리학 하위 영역에서의 윤리 규정의 내용과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담치료자로서의 의무가 법률이나 법정에서 요구하는 법심리학자로서의 의무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이나 상담 영역에서는 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병원이나 클리닉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지만 판결에 의해 치료이수 명령을 받은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치료를 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치료를 제공하는 치료자의 역할과 법심리학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윤리 규정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또한 법심리학자들은 피고인(변호인), 검사, 판사(법원) 또는 이 모두가 각각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법심리학 분야에서 윤리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소극적일 수 있다.

결 론

한국에서는 아직 법이나 형사사법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심리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아직 많지는 않지만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심리학자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검찰, 경찰, 교정, 보호관찰, 그리고 군이나 정보기관에서도 심리학 전공자나 임상, 상담, 범죄 심리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들이 채용되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으로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전문가로 증언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법제도에서 실증적인 평가가 필요한 영역을 법학자들이 파악하면 심리학자들이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정이나 개정의 근거로 사용되고 정책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박광배, 1999).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법심리학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몇 개에 대학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심리학의 연구 분야나 이 분야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수요에 비해 전문가의 비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법심리학은 심리학 분야에서의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법체계나 법에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형법, 사법제도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심리학적 지식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심리학자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의 경우 임상적 훈련과 법임상적 교육과 훈련이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각 기관의 역할, 특성, 그리고 관할 지역에 따라 법임상적 훈련이 그 기관에서 별도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법심리학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교도소와 같이 현재 관련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법심리학 분야에서 필요한 연구를 확인하고 실무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법심리학자들의 전문성, 중립성,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이수정, 서상진, 2010) 법심리학 관련 윤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도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문심리위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적정수준에서 현실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이수정, 서상진, 2010). 앞으로 국가적 정책으로 인해 법심리학자의 역할이 확대 및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훈련과 함께 현재 시행중인 정책도 수정 및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민지 (2010). 전문가의 법정 증언에 대한 인식 및 증언의 허용성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3), 77-90.
- 김시업 (2005). 한국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주요 연구영역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109-142.

- 이수정 (2010). 최신 범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수정, 서상진 (2010). 국내 형사재판에서의 전문심리위원 활용실태. *한국경찰연구*, 9(2), 137-160.
- 이수정 (2012). 형사법정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실태 연구: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2), 219-257.
- 박광배 (1997). 과학적 증거의 법적 타당성. *형사정책연구*, 8(1), 79-107.
- 박광배 (1999). 미국 법심리학의 발전과 현황. *법조*, 515, 216-258.
- 박광배 (2002). 법심리학. 서울: 학지사.
- 박광배, 최상진, 이훈구 (1998). 법심리학의 영역: 요약.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49-71.
- 박지선 (2012). 범죄심리학. 서울: 그린.
- 법원행정처 (2007). 전문심리위원 제도 해설. 사법정책실.
- 정재준 (2011). 심신상실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시도: 한미 비교를 통한 맥나튼룰 도입 가능성 제고. *비교형사법연구*, 13(2), 461-490.
- 황지태 (2010). 한국사회의 범죄증가추세에 대한 비판적 연구: 공식통계상 범죄율 증가와 범죄피해조사상 피해율 감소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Specialty guidelines for forensic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68(1), 7-19.
- Bartol C. R. & Bartol, A. M. (2013). 법정 및 범죄심리학 입문 [Introduction to Forensic Psychology]. (이장한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8년에 출판)
- Bonnie, R. J., & Grisso, T. (2000). Adjudicative competence and youthful offenders. In T. Grisso & R. G. Schwartz (Eds.). *Youth on Trial: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criminal justice* (pp. 73-103).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rl, J., Shah, S., Filone, S., Foster, E., & DeMatteo, D. (2012). A survey of graduate training programs and coursework in forensic psychology. *Teaching of Psychology*, 39, 48-53.
- Brigham, J. C. (1999). What is forensic psychology, anyway? *Law and Human Behavior*, 23(3), 273-298.
- Brown v. Board of Education*, 375 U.S. 483 (1954).
- Cooper, J., Bennett, E. A. & Sukel, H. L. (1996). Complex scientific testimony: How do jurors make decisions? *Law and Human Behavior*, 20(4), 379-394.
- Day, A., & Tytler, R. (2012). Professional training in applied psychology: Towards a signature pedagogy for forensic psychology training. *Australian Psychologist*, 47, 183-189.
- Diamond, S. S. (2002). Convergence and complementarity and lay adjudicators. In van Koppen, P. J., & Penrod, S. D. (Eds.). (2002). *Adversarial versus inquisitorial justic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criminal justice systems*. New York: Plenum.
-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113 S. Ct. 2795, (1993).
- Gotowski, S. I., Dobbin, S. A., Richardson, J. T., Ginsburg, G. P., Merlino, M. L., & Dahir, V. (2001). Asking the gatekeepers: A national survey of judges on judging expert evidence in a post-Daubert world. *Law and Human*

- Behavior*, 25(5), 433-458.
- Grisso, T. (1991). A developmental history of the American Psychology-Law Society. *Law and Human Behavior*, 23, 273-298.
- Haney, C. (1980). Psychology and legal change: On the limits of a factual jurisprudence. *Law and Human Behavior*, 15, 213-231.
- Heilbrun, K. & Brooks, S. (2010). Forensic psychology and forensic science: A proposed agenda for the next decade.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3, 219-253.
- Hess, A. K., & Weiner, I. B. (Eds.). (1999). *The handbook of forensic psychology* (2nd ed.). New York, NY: Wiley.
- Krafka, C., Dunn, M. A., Johnson, M. T., Cecil, J. S., & Miletich, D. (2002). Judge and attorney experiences, practices, and concerns regarding expert testimony in federal civil trial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8(3), 309-332.
- Kovera, M. B. & McAuliff, B. D. (2000). The effects of peer review and evidence quality on judge evaluations of psychological science: Are judges effective gatekeeper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4), 574-586.
- Kovera, M. B., Russano, M. B., & McAuliff, B. D. (2002). Assessment of the commonsense psychology underlying Daubert: Legal decision makers' abilities to evaluate expert evidence in hostile work environment case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8(2), 180-200.
- Lieberman, J. D., Carrell, C. A., Miethe, T. D., & Krauss, D. A. (2008). Gold versus platinum: Do jurors recognize the superiority and limitations of DNA evidence compared to other types of forensic evidence?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4(1), 27-62.
- Munsterberg, H. (1908). *On the witness stand*. Garden City, NY: Doubleday.
- Ogloff, J. R. P. (2000). Two steps forward and one step backward: The law and psychology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Law and Human Behavior*, 24(4), 457-483.
- Otto, R. K., & Goldstein, A. M. (2013). Overview of forensic psychology. In R. K. Otto & I. B. Weiner (2nd eds., Vol. 11). *Handbook of Psychology: Forensic Psychology* (pp. 3-14).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Packer, I. K., & Borum, R. (2013). Forensic training and practice. In R. K. Otto & I. B. Weiner (2nd eds., Vol. 11). *Handbook of Psychology: Forensic Psychology* (pp. 16-36).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Parsi, H. (2010). Law and psychology education: An evaluation of economic, professional and scholastic issues in dual doctoral programs. Master's Dissertation, Pacific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Palo Alto University.
- Roesch, R., Zapf, P. A., & Hart, S. D. (2010). *Forensic Psychology and Law*.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Wells, G. L., Small, M., Penrod, S., Malpass, R. S., Fulero, S. M., & Brimacombe, C. A. E. (1998). Eyewitness identification procedures: Recommendation for lineups and photospreads. *Law and Human Behavior*, 23, 603-648.

1 차원고접수 : 2013. 11. 01.

심사통과접수 : 2013. 11. 13.

최종원고접수 : 2013. 11. 25.

What is Forensic Psychology?: Research Areas and Roles of Forensic Psychologists

Min C.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Forensic psychology is a subdiscipline of psychology that applies theory, research, or practice of psychology to problems and issues related to the legal and criminal justice system. Recently, public interest in the area has grown immensely, but lack of clear understanding and use of multiple terminologies resulted in public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of the field. Therefore, starting with historical events, the current study discussed development of the terminology, definitions provided by scholars and academic organizations, and a comparison between other related areas of research domains in order to provide full description of the field of forensic psychology.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d how other scholars explained research domains of forensic psychology and described education and training as well as ethical guidelines of North American countries in order to examine what types of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provided in Korea. Lastly, policy changes related to forensic psychology and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forensic psychology, psychology of criminal behavior, psychology in court, education and training, ethical guidelines